



# 圖書館 組織運營의 發展戰略에 관한 研究 (完)

崔 龍 夫  
釜山女大圖書館

## 五. 館種別 圖書館의 機能上 問題點

### 1. 公共圖書館

#### ① 學生閱覽室

現在の 公共圖書館은 住民全體에 對한 積極奉仕보다는 上級學校 進學生들의 豫習이나 複習場으로 變質되고 있어 住民을 위한 社會教育의 實現이 얼마나 成就되고 있는지 問題다. 閱覽室이 學生들의 受驗準備場所로 變換 現象은 어느 圖書館이나 共通된 것이다.

#### ② 移動文庫의 活用性

移動圖書館(Traveling Library)은 自動車, 船舶등을 利用하여 遠距離에 居住하는 個人이나 團體에 奉仕하는 것으로서 美國은 1965年度에 1,500臺, 英國은 1965年度에 250臺, 日本은 1969年度에 180臺를 保有하여 2週日에 1회씩 巡回하며 2名의 司書가 1,000~1,500卷의 圖書를 싣고 貸出奉仕에 나섰었다.<sup>50)</sup> 市立東大門圖書館의 경우 1臺의 移動文庫車輛으로서 地域, 學校, 職場에 定期巡回하면서 一般, 在學生, 職場人에게 15日間격으로 貸出하여 歡迎을 받고 있다.<sup>51)</sup> 이것은 遠距離, 利用時間의 不適合, 交通의 不便등으로 公共圖書館을 利用하지 못하는 住民과 職場人에게 特別 必要한 奉仕形態이다. 그러나 이것도 釜山市立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과 같은 公共圖書館에서 몇대의 移動文庫車輛으로서 얼마나 住民奉仕가 이루어질지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急激한 産業社會化의 趨勢는 讀書을 外面하고 利潤追求나 生存競爭, 電波媒體에 執着하는 現實에서 讀書獎勵政策 보다는 積極讀書 誘因體制의 確立이 時急한 것이다.

#### ③ 兒童 및 靑少年利用組織

公共圖書館의 組織構造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도 兒童閱覽室이 있으나 美國과 日本처럼 하나의 單位組織인 係나 課의 形態로 重點을 두지 않고 있다. 兒童은 그나라 다음世代의 主人公으로서 知識擴大를 위한 體驗의 強化는 莫重한 것이므로 이에 對한 圖書館施設과 組織體系의 未備는 問題가 된다.

이와 關聯하여 어린이와 靑少年의 健全한 成長을 圖

謀하기 위해 公共圖書館에서 어린이 讀書教室등의 運營은 必須의이며 部分的인 活動을 展開하고 있지만,<sup>52)</sup> 비슷한 年齡, 趣味, 教養, 職業階層을 通한 讀書會의 組織과 運營에 公共圖書館의 參與幅이 얼마인지 問題가 된다. 美國, 덴마크, 西獨, 英國등에서는 靑少年을 위한 靑少年圖書館과 閱覽室을 두어 公共圖書館의 讀書教育을 積極化하여 크게 效果를 보고 있음<sup>53)</sup> 注意 깊게 보아야 한다.

#### ④ 公共圖書館에 對한 指揮體制

公共圖書館은 文教部 社會教育局 成人教育係의 分擔事務의 一部로 取扱되고 있으며, 所屬廳이 文教部, 市·道教育委員會, 內務部의 市·郡率下로 分散되어 있어 組織의 指導體系에 混亂을 가져와 公共圖書館育成에 虛點을 들어내고 있다. 더구나 圖書館長의 行政職 任命은 圖書館組織運營의 技術的인 側面을 度外視하는 것이므로 司書專門職으로 任命하거나 行政職 館長에게 圖書館學 研修를 義務化 시켜야한다는 見解까지<sup>54)</sup> 擡頭되고 있다. 美國은 圖書館專擔部署로서 保健教育福祉省長官아래에 圖書館局을 두고 그아래 公共圖書館課의 組織體系를 갖추어<sup>55)</sup> 指揮體系의 一元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 ⑤ 現職司書의 再教育

公共圖書館의 奉仕內容도 社會·經濟的, 産業構造의 變化와 새로운 技術의 幅鑷에 의하여 漸次로 細分化되고 있으며 이에 副應하기 위해서 最新의 知識習得은

50) 梁泰鎮 “圖書館機能의 能率極大化”, 도립월보, 16卷3號 (1975. 4) p.6-7.

51)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前掲書, p.8.

52) 어린이讀書教室運營(경주: 경주중앙도서관, 1978) 참조. 경주중앙도서관의 特別활동인 어린이독서교실의 운영은 모범적이다. 매주토요일마다 시내 전국민교생을 대상으로 (100명) 2시간동안 동화, 역사, 전기등을 어린이에게 들려주고 있으며 10년간 계속되고 있다.

53) 梁泰鎮, “圖書館과 靑少年讀書教育”, 도립월보, 17卷7號(1967. 9) p.17-19.

54) 金世翊, “圖書館長論: 특히 公共圖書館長의 경우”, 등재문도서관보, 제6호. (1977. 5) p.35.

55) 第13回 全國圖書館大會 行事內容, 도립월보, 16卷9號 (1975. 11) p.8-9.

勿論 趨勢의 變化에 適應할 必要가 있다. 이를 위해 現職司書의 短期間海外研修나 見學이 國立大學校 圖書館에서 極少數 이루어졌을뿐 公共圖書館分野는 전혀 없는 狀態이다. 뿐만아니라 自體教育의 實施도 無誠意한 狀況이므로 古典的 圖書館學理論에 의한 奉仕의 質的 抵下와 技術上의 落後性은 問題가 된다. 先進國의 公共圖書館에서는 圖書館의 構造變化에 對應하고 利用者 要求의 變化에 따른 奉仕의 修正, 콤퓨터 應用에 對備한 技術習得을 위해 自體教育을 義務化하고 있음을<sup>56)</sup> 注視해야 한다.

#### ⑥ 廣域情報組織網

圖書館資料의 量的膨脹과 豫算의 制約사이에는 資料構成의 脆弱이라는 函數關係가 成立되며 結果的으로 資料要請에 副應하는 奉仕成率이 相對的으로 低下되어 公共圖書館의 目的과 背馳되게 된다. 이를 補完하기 위해 情報源과 利用者를 連結시켜 주기 위한 組織體制가 廣域情報組織網이다. 여기에는 公共圖書館 相互間 또는 他種圖書館과의 相互協同組織 體系를 形成시켜 社會의 要求에 副應하는 圖書館組織의 定立은 必要하다. 이를 單位地域으로 縮小시켜 보던 分館組織問題가 나온다. 뉴욕公共圖書館에는 該當 全地域을 包括하는 80個以上の 分館을 가지고 있으며, 人口 300萬名의 釜山規模와 같은 로스앤젤레스市立圖書館은 28個의 分館組織을 形成하고 있음에 비추어<sup>57)</sup> 서울과 釜山의 極少數分館組織으로서 얼마나 社會要求에 副應할것인지 問題이다. 釜山市의 경우 人口 5萬名當 1個의 分館이 必要한 것으로 본다면 60個의 分館이 있어야 된다는 結論이 나오지만 現況은 3個의 公共圖書館에 2個의 分館組織을 갖추고 있을뿐이다.

#### ⑦ 公共圖書館 設置問題

美國은 1890年 洲圖書館委員會의 努力으로 公共圖書館이 發展하게 되는 原動力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公共圖書館의 設立이 制度化된 以後에<sup>58)</sup> 急激한 量的 膨脹으로 社會의 需要를 充足시키기에 이르렀다. 英國은 1850년에 公共圖書館法이 制定된 以後 1964年 改正을 거쳐 地方自治團體가 公共圖書館의 設置運營을 義務化 하였으며<sup>59)</sup> 모든 國民이 公共圖書館奉仕의 惠澤을 받고 있다. 1972年 英國國家 中央圖書館法을 制定하여 大規模의 國家中央圖書館을 設置하는 事業이 1980년에 完成目標로 推進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公共圖書館設置에 관한 獎勵規定뿐이고<sup>60)</sup> 義務規定은 없다. 때문에 社會需要에 副應할 수 있는 體制가 構成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最近에 와서 公共圖書館設立 5個年計劃을 세워 1978년부터 1983년까지 公共圖書館이 없거나 脆弱한 地域부터 圖書館을 新設 또는 增築하려는 計劃이 發表된 程度이다.

#### ⑧ 主題別 資料室

特殊圖書館은 該當機關의 特性이나 企業體의 類型, 生産內容에 따라 該當主題에 관한 圖書와 資料를 具備하고 있지만 그것으로서 社會奉仕를 위한 開放의인 體制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産業社會의 發展過程에는 知識情報가 自然히 要求되며 이를 支援하는 것도 公共圖書館이 擔當해야한 奉仕의 領域이 된다. 이미 1902年 신시내티公共圖書館에는 有用資料室을, 1908년에는 뉴욕公共圖書館이 産業文獻室을 設置運營한 實例가 있다.<sup>61)</sup> 極히 一部 公共圖書館에서는 産業資料室과 行政資料室과 같은 特定主題圖書를 한자리에 모아 奉仕하고 있을뿐<sup>62)</sup> 기타 大部分의 圖書館은 基本藏書마저 具備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重化學工業國家를 指向하는 發展趨勢에 圖書館의 情報提供機能이 落後될때 公共化書館의 存在意義는 相對的으로 減少될 수 밖에 없다.

#### ⑨ 直接教育奉仕

公共圖書館의 機能에 대한 現代의 定義중에서 生産教育을 위한 再教育和 自我改善을 위한 非定型的 教育이 強調되는 公共教育機能이 指摘되고 있는 것은<sup>63)</sup> 教育奉仕役割의 重要性 때문이다. 圖書提供, 資料案内, 參考奉仕를 통한 間接的인 教育奉仕機能에서 文化行使를 통한 地域住民의 意識開發은 公共圖書館의 直接教育奉仕가 된다. 座談會, 鑑價會, 讀書發表會, 讀後感募集같은 行事は 繼續되고 있지만 그것이 住民에게 대한 直接教育奉仕의 機能을 遂行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制限된 對象이나 階層에 대한 위와같은 行事は 形式에 흐를 危險이있으며 實效性없는 展示效果에 그칠수도 있다. 무엇이 直接教育을 위한 行사이며 實效性있는 奉仕의 推進인가를 區別하여 事業計劃을 推進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이 問題이다.

#### ⑩ 圖書館의 財政

圖書館運營의 圓滑化를 위한 豫算의 合理的인 調整은 基本的인 圖書館의 存立과 關係되며 豫算없는 圖書館運營은 形式에 치우칠 憂慮가 있다. 서울特別市의

56) 鄭泰淑, “켄자즈市 公共圖書館의 再教育프로그램”, 도협월보, 19卷2號 (1978.3) p.16-17.

57) 梁泰鎮, “圖書館利用의 極大化”, 圖協月報, 16卷3號 (1975.4) p.6.

58) Gates, Jean Key, op. cit., p.21.

59) 張一世, “國家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 도협월보, 16卷9號 (1975.11) p.13.

60) 圖書館法, 第18條 (公立의 圖書館의 設置) 參照.

61) 金斗弘, “産業에 대한 公共圖書館奉仕”, 도협월보, 14卷1호 (1973.1) p.7-11.

62) 동대문도서관, 前揭書, p.9-18. 參照.

63) 支圭燮, “公共圖書館 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 도협월보, 16권9호 (1975.11) p.17.

全體公共圖書館의 豫算을 1977年度를 基準으로 市豫算 1,200億원중에서 7.89%에 該當하는 轉入金에서 겨우 7.2%인 部分이 圖書館豫算으로 6億8千2百餘萬원이 며<sup>64)</sup> 이것으로 서울市內 모든 公共圖書館이 다시 分配 받아야하는 實情이다. 서울市 全體豫算의 0.5%가 600萬名의 住民을 對象으로하는 文化事業費로 使用된다는 것은 現代 情報社會에서 公共圖書館이 擔當해야할 役割에 比하여 거의 文化政策의 不在를 나타낸다고 볼수 밖에 없다. 더구나 東大門圖書館의 1977年度 豫算支出 內譯을 보면 人件費가 60.89% 其他運營費가 29.41%, 나머지 9.6%가 圖書購入費로서 年間 980萬원이니 이것 으로서 必要한 最新 資料를 購入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圖書館資料奉仕의 質的인 部門이 얼마나 脆弱點을 많이 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다. 釜山市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市稅로서 運營되는 圖書館豫算에서 教育委員會의 一部補助가 있으며 大部分 人件費와 其他 運營費에 充當하고 圖書購入費는 微弱한 水準에 머물러 있음은 問題가 되지 않을수 없다.

## 2. 學校圖書館

### ① 學校圖書館의 施設問題

初·中·高等學校의 圖書館施設基準은 學校施設基準令중에서 學校圖書館의 施設 및 資料의 基準을 設定하고 있으나 閱覽座席數를 除外한 藏書基準은 大部分의 學校에서 未達하고 있다. 學校施設 設備基準令에 의한 閱覽座席은 初等學校가 普通教室兼用, 中學校가 1學級當 3席, 高等學校가 1學級當 5席으로 規定하고<sup>65)</sup> 있으나 貧弱한 施設基準이다. 美國은 學生數 550名以下가 55席, 日本은 在學生數의 10%로 規定하고 있는데 比하여<sup>66)</sup> 韓國은 在學生數의 5%未滿의 施設基準을 設定하고 있는 實情이다. 適切한 施設確保야말로 在學生들에게 安定感과 靜謐한 雰圍氣를 提供할수 있어 學習效果와 讀書能率을 向上시킬수 있다고 볼때 圖書館의 基礎施設인 座席數의 脆弱點은 問題가 되지 않을수 없다.

### ② 藏書量의 問題

學校圖書館의 藏書基準은 國民學校가 學級當 100卷, 中等學校가 學級當 單行本 150卷以上으로서 學校마다 600卷以上으로 基準令에 設定하고 있으나 基準確保比率은 平均 50%도 되지않고 있는 實情이다.<sup>67)</sup> 美國은 學生數 999名以下일때 9,000~10,000卷을, 日本은 學生 1人當 5卷의 基準과 比較하면 韓國은 2卷程度의 藏書基準밖에 되지 않는다. 이같은 少量의 藏書基準으로서 學生과 敎員의 學習과 調査 및 레크레이션을 위한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지 疑問이며, 이같은 藏書基準에도 不拘하고 基準確保比率의 低調는 學校圖書館의 任務와 關聯지어 볼때 問題가 아닐수 없다. 文教部의

學校圖書館育成計劃에서 言及하고 있듯이 『計劃의인 讀書指導를 實施하여 讀書人口의 底邊을 擴大하고 幅 넓은 讀書로 바람직한 人間形成을 期하도록 教育』시킬 수 있는 것인지 疑問이다.

### ③ 司書敎師問題

國民學校에는 1人以上의 司書敎師를, 中高等學校에는 學生數 1,200名을 基準으로 하여 1人乃至 2人의 司書敎師를 두도록 規定하고 있으나<sup>68)</sup> 司書敎師의 業務量으로서는 無理이다. 司書敎師가 學校長의 計劃과 指導方針에 依據하여 學校圖書館運營委員會, 學校圖書委員會 運營, 資料蒐集, 備品管理, 圖書部運營등의 管理業務, 分類와 目錄, 製本, 圖書點檢등의 技術的인 業務와 圖書館利用指導, 閱覽 및 貸出등의 奉仕業務까지 擔當케 하는 것은 問題가 된다.

日本의 學校圖書館은 450名以下 일때 兼任 司書敎師 1人을, 450名以上 일때 專任 司書敎師를 두고 있음과 比較하면<sup>69)</sup> 韓國과같이 1,200名을 基準으로 司書敎師 1人의 兼務는 無理이며, 제대로의 機能發揮를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 ④ 正規司書의 配置問題

學校圖書館에서는 司書敎師와 司書의 職을 擔當한 敎師를 둔다는 規定뿐으로서 一部學校圖書館을 除外하고는 司書를 採用하지 않고있는 實情이다. 司書敎師아래 助務員을 두고서<sup>70)</sup> 助務員으로 하여금 圖書館業務를 全般的으로 代行하게 함으로서 技術業務의 不實化와 奉仕機能의 麻卑現象을 빚고있다. 放課後에 圖書部員의 助力을 받을수 있는 것이지만 圖書員의 協力할 수 있는 範圍란 單純한 貸出業務나 環境美化등으로서 그들에게 技術的인 業務의 助力을 期待할수도 없는 狀況이다. 司書敎師는 兼務이므로 學校授業을 擔當하면서 圖書館業務를 擔當하는것도 不合理하며 圖書館奉仕가 제대로 될지도 疑問스럽다. 더구나 圖書館學에 關한 教育을 받지도 않은 助務員으로서 圖書館業務를 合理的으로 推進시켜 나갈지도 問題이다.

### ⑤ 圖書館利用指導, 讀書指導

在學生들로 하여금 圖書館利用法등의 圖書館 利用指

64) 동대문도서관보, 제6호 (서울: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1977) p.26. 豫算의 原泉을 參照.

65) 學校施設·設備基準令(1969.12.4 大統領令第4398號) 第5條(校舍) 6項에 의거한 [별표 3] (1973.9.14일 新設, 大統領第6354號)을 參照.

66) 趙載厚, "학교도서관의 나아갈 길", 도협월보, 17권4호 (1976.5) p.25. 學校圖書館基準對比表 參照.

67) 趙載厚, 上揭論文, p.24.

68) 圖書館法施行令, 第6條(司書職員 또는 司書敎師등의 配置基準) 第12項의 1,2를 參照.

69) 趙載厚, 前揭論文, p.25.

70) 學校圖書館 組織圖를 參照.

導와 敎科科目 以外的 폭넓은 趣味讀書, 敎養讀書의 涵養을 위한 讀書指導를 實施함으로써 圖書館의 機能 遂行과 敎育目的을 達成할 수 있음은 當然하다. 그러나 現行의 敎科課程上 圖書館利用指導나 讀書指導를 위한 時間配定이 全無한 狀態에서 如何히 讀書指導를 할 것인가가 問題이다. 特히 中·高等學校의 경우에는 上級學校 進學을 위해 敎科課程에 나타난 限定된 科目에만 置重하여 全人的인 敎養의 發展과 自我開發을 위한 讀書는 不可能한 狀況에 놓여져 있어 圖書館이 放課後의 豫習, 複習場으로 變貌하고 있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學校圖書館 設置의 目的과 敎科課程運營사이에는 커다란 矛盾을 內包하고 있어 學校圖書館의 機能은 無意味하게 되어가고 있다.

#### ⑥ 讀書指導 專門敎師問題

學校圖書館의 司書敎師는 學校圖書館의 實務와 運營을 擔當할뿐 아니라 讀書指導業務까지 한 사람이 擔當해야할 形便인데다가 授業까지 겹쳐 人氣도 없으며 事實上 司書敎師制度의 實效性이 疑問視되고 있다. 國際讀書學會(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에서 規定하고 있는 讀書指導專擔의 讀書專門敎師의 種類와 役割을 보면<sup>71)</sup> ①讀書指導敎師는 讀書의 敎正과 啓發을 擔當하고 ②讀書診療敎師는 讀書無能力者에 대한 診斷, 敎正 및 敎正計劃業務를 가지며 ③讀書相談役은 讀書에 대한 特殊敎育을 받은 監督官의 指示에 따라 讀書計劃을 樹立하고 ④讀書監督室은 學校에서 이루어지는 讀書計劃의 모든 分野에 관한 指導를 擔當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讀書專門敎師의 資格도 碩士學位以上 修了者로서 讀書關係科目을 履修한 者로 規定하고 있어<sup>72)</sup> 水準높은 專門家를 要求하고 있다. 讀書專門敎師야말로 在學生의 讀書能力向上뿐만 아니라 讀書無能力者의 診療와 敎正까지 擔當하여 在學生敎育에 直接關與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 ⑦ 圖書館豫算

學校圖書館豫算의 適正配分은 施設과 資料, 職員確保 등에 必要不可缺의 要素임에도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의 豫算은 最下位에 머물러 있는 實情이다. 學校圖書館의 運營費는 後授會費, 期成會費, 育成會費 등에서 一部를 補助받아 使用하며 學徒護國團費에서 조차 補助가 禁止되어 運營의 不實을 自招한 것이다.

美國은 1965年度에 制定한 初·中等學校敎育法(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안에 學校圖書館의 學習資料와 圖書館資料의 擴充 5個年計劃이 包含되어 있었으며 計劃施行 1次年度에 무려 8,500萬弗以上の 豫算을 投入하여 美國의 全體學生 90%以上에게 惠澤이 돌아가게 한 바 있다.<sup>73)</sup> 豫算의 뒷받침없이 學校圖書館 運營指針을 下達해도 그 效果는 없는 것이다.

學校圖書館이 在學生의 自律的인 讀書를 하기엔 施設과 圖書, 職員 모두가 不足한 것은 問題가 되며, 劃期的인 方法에 의한 資料의 增加와 施設의 再整備가 없는 現在의 狀態를 踏襲하게 될 것이다.

### 3. 大學圖書館

#### ① 在學生의 圖書館理解

學部在學生들은 제각기 學科나 專攻分野가 다르고 그들이 參考해야할 圖書도 多樣하다. 講義用 基本敎材만으로 專攻科目을 履修할 수 없고 關聯參考圖書나 資料를 活用하는 能力의 培養이야말로 至極히 必要하고 時急하다. 圖書館의 參考室, 定期刊行物室, 目錄函이 어떤 役割을 하고 어떻게 利用하는 것인지<sup>74)</sup> 圖書館의 分類表는 무엇으로 되어있는지를 理解하고 活用하는 學生이 얼마나인 지 問題다. 新入生 오리엔테이션때 하는 圖書館 案内로서는 不足하다. 學問의 變化和 새로운 理論의 出現이 加速化하는 現時代에서 빠른 情報를 入手하기 위해 圖書館을 利用하는 方法부터 在學生은 모두 理解해야하고 最少限 圖書館學이 무엇인가의 基本知識을 體得해야 바른 圖書館 活用在 可能하게 된다. 圖書館의 基本役割과 機能만이라도 理解할때 利用者인 在學生·敎授와 司書間에 생기는 些少한 磨擦은 自然히 解消될 것이고 格調높은 圖書館의 品位를 維持하게 될 것이다. 問題는 圖書館을 利用하는 學生들의 圖書館에 대한 理解력이 얼마나 있는나 하는 것이다.

#### ② 指定圖書室의 運營

指定圖書室 또는 課題圖書室이란 該當學科科目을 履修하는데 必要한 敎科書 등 關聯參考書를 擔當敎授가 指定하여 別置시켜놓은 圖書室이다. 講義效率의 増大와 豫習效果를 높여 講義進行을 順調롭게 하자는 것이다. 外國에서 많이 施行하는 制度로서 一部の 大學圖書館(釜山大, 全北大, 成均館大)에서 施行하고 있을뿐 大部分 이를 外面하고 있는 實情이다. 指定圖書室의 運營은 圖書館利用方法을 모르는 學生들에게도 效果의으로 利用할 수 있는 長點이 있지만 限定된 圖書만으로 學部課程의 履修를 安易하게 생각하여 廣範圍한 資料의 檢索을 外面할 憂慮도 있다. 그러나 圖書館 利用方法에서 學生들에게는 效果的인 方法이 될수 있다.

#### ③ 奉仕의 問題點

많은 圖書館이 利用者들의 便宜를 外面하고 있으며 參考서비스 같은 基本的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안고 있을뿐 아니라 圖書館과 敎授活動과의 連繫가 未洽하며

71) 李正熙, “學校圖書館과 讀書指導의 問題”, 도림월보, 17卷7號 (1976.9) p 24.

72) 李正熙, 上揭論文, pp.24-25. 參照.

73) Gates, Jean Key, op. cit., p.22-23.

74) Brogan, Gerald E., and Buck, Jeanne T., op. cit., p.6-10.

圖書館의 要員들이 專門의 教育과 訓練을 받았는지 疑問스럽고 圖書館運營에 關한 基本哲學과 能力과 技術이 不足하다는<sup>75)</sup> 批判의 소리를 外面할 수 있는 狀況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一部分의 批判이라고 하더라도, 對人奉仕에서 참으로 誠實하고 즐겁게 奉仕하고 있는지, 不足한 分野의 實務나 知識을 補充하려는 熱意가 있었는지, 奉仕의 質的인 面에서 利用者보다 優秀한 要員을 要所に 配置하여 滿足感을 주었는지, 奉仕技術의 老練化를 위한 自體技術의 研修나 教育이 實施되었는지를 反省하는데 躊躇하지 말아야 한다. 大學圖書館의 司書는 學校圖書館보다는 次元 높은 知識과 技術이 要求되며 知性的인 親切과 奉仕精神이 앞서야 하는데 이의 實踐을 위한 不斷한 努力과 制度의 改善이 連續的으로 履行되어 왔는지는 問題點이 되고 있다.

③ 相互貸借 問題

大學에서의 學術研究를 위해서는 廣範圍한 參考資料가 必要하며 該當大學圖書館의 所藏資料로서는 貧弱한 경우가 大部分이므로 부득기 他大學圖書館을 利用하지 않을 수 없다. 美國은 1968年度에 國立相互貸借法(Rules of the national interlibrary loan code)을 制定하여<sup>76)</sup> 利用者範圍, 利用資料範圍, 貸借節次, 返納, 經費負擔 등에 關한 規定을 하고있어 利用의 便宜를 圖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8년에 「圖書館資料 相互貸借 協定案」을 採擇하여<sup>77)</sup> 國立中央圖書館, 大學圖書館, 特殊圖書館 등 15個館이 加入하여 實施中이며, 韓國醫學圖書館協議會와 一部大學圖書館간(延世大, 梨花女大, 西江大)相互貸借이 이루어지고 있다. 部分的으로 實施되고 있는 相互貸借을 積極化하면 教授나 學生들의 資料利用에 도움이 되며 圖書館 相互間의 資料未備를 補充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⑤ 主題司書 問題

現代의 學問趨勢에 비추어 大學圖書館은 集中管理組織보다는 主題別圖書館으로 分散해서 組織하는 分散管理組織이 先進國에서 거의 모두 採擇하고 있다. 우리나라 學問領域에 逆行하는 集中管理 方式을 取하고 있어 利用의 不便과 資料檢索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一部分의 大學에서는 分散管理의 形態로서 主題圖書室을 두고 있는 形便이다. 앞으로 資料의 增加 學問領域의 細分化에 따라 利用者에게 專門領域別로 圖書를 利用케 하기 위해서는 主題別圖書館으로 分散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이 主題司書이다. 主題司書는 醫學, 工學, 宗教 등 特定分野의 學問에 폭넓은 知識을 갖춘 專門司書를 말한다. 工學圖書館에서 工學을 工夫하지 않은 司書가 어떻게 資料奉仕를 할 것인가. 여기서 各分野別 專攻을 가진 主題司書를 確保하

는 課題가 남게 된다. 醫師나 技術者가 圖書館學을 工夫하고 果然 圖書館에 勤務할 수 있는가가 問題이다. 利用者에게 水準 높은 奉仕를 期하기 위해서 必要한 主題司書는 그 役割이 크다고 보며 全主題에 걸쳐 主題司書를 確保하는 問題는 큰 難點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主題司書를 圖書館에서 確保치 않을 수 없는 狀況이 到來될 것임은 分明하다고 보아진다.

⑥ 司書의 處遇問題

處遇改善이 要請되는 것은 비단 大學圖書館의 司書에게만 該當되는 것은 아니지만, 情報社會化의 趨勢에 따른 司書의 知的活動과 高度의 技術性을 갖춘 奉仕의 提供이라는 點에서 知的, 技術의 能力의 所有者라야 만이 바른 情報傳達의 役割을 할 수 있으며, 士氣振作의 誘因設定이 前提되어야만 業務의 能率이 比例的으로 向上할 것 이라는 點을 考慮해야 한다. 現在와 같은 處遇는 一般行政職과 같은 것으로서 情報管理의 專門性을 갖춘 司書에게는 不當한 바가 많다. 그것은 바로 大學教育의 進行과 關聯되는 教育的奉仕를 遂行하고 있음에도 敎員의 水準과는 距離가 먼 待遇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司書들에게 合理的인 給與水準을 維持하는 것은 現在의 自虐的인 狀況을 大幅 改善케 하는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⑦ 國內外 研修問題

時代狀況에 맞춘 最近의 圖書館動向과 技術的 分野의 體得으로 奉仕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해 司書로 하여금 業務研修를 시키는 것은 必要하다. 研修過程에서 얻은 새로운 圖書館奉仕의 知識을 應用하여 改善된 業務遂行을 可能케 하기 때문이다. 서울大學校 圖書館에서 地方 國立大學校 圖書館의 司書를 一部 研修시키고 있으며, 現職 圖書館司書로서 短期間의 海外研修를 받은 者는 極少數뿐이다. 그러한 研修機會도 中央의 國立大學校司書에 制限된 微弱한 것이었다. 産業發展을 위한 새로운 技術習得을 위한 갓가지 海外研修活動과 比較하면 司書의 海外派遣研修는 白紙狀態와 같다.

長期的인 眼目에서 高度의 技術情報를 要請하는 利用者에게 代한 情報提供의 役割이 크게 後退하여 低質化될 것이 憂慮된다.

⑧ 組織構造의 不合理

大學圖書館의 組織은 性格上 利用者에게 最大의 奉仕를 可能케 하는 機能別, 主題別 資料組織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綜合大學校로 부터 初級大學에 이르기 까지

75) 金鍾喆, “教育과 圖書館”, 도협월보, 17권8호(1976.10) p.7-10.

76) 金光永, “美國圖書館의 業務實習”, 도협월보, 제16권2호(1975.3) p.50.

77) 金鎮龍, “大學圖書館 奉仕를 위한 相互貸借에 關한 研究” 도협월보, 제17권4호(1976.5) p.19-22.

收書課와 閱覽課의 一元化된 組織編成을 法規化하여 規模가 큰 綜合大學校圖書館의 경우 業務의 非專門化와 輻輳로 계기능을 發揮할 수 없는 實情이다. 모든 直接奉仕業務는 閱覽課에 集中되어 圖書館規定에 의한 各室의 運營으로 命脈을 維持하고 있다. 書誌調查業務도 獨立된 組織編成이 되지않아 圖書館 나름대로 活動을 하고 있으며 綜合目錄, 索引集, 抄錄集 등의 刊行은 極히 미미한 狀態에 머물러 있어 利用者에게 不便단 주고 있다. 主題別圖書館이 없어 應急措置로 單科大學 分室을 運營하는 등 組織의 能率의인 業務를 不可能케 하는 組織編成은 問題다 아니할 수 없다.

⑨ 豫算問題

圖書館豫算은 組織의 業務를 計劃하고 推進하는 原動力으로서 財政問題는 大學圖書館마다 深刻한 問題가 되고 있다. 豫算의 源泉은 自治費와 國費로 構成되어 있으며 國立大學의 경우 自治費로서 期成會費중에서 一定額을 圖書費로 策定하며, 國費는 受容費중에서 文教部의 方針과 指示에 따라 圖書費로 使用할 수 있는 額數를 策定하고 있으나 自治費에 比較하면 國庫補助는 3分之 1밖에 되지않는 實情으로서 서울大學校圖書館을 除外한 國·公立大學圖書館은 基本藏書基準量에 훨씬 未達하고 있다. 國·公立大學圖書館의 司書는 公務員이므로 豫算중에서 願用員人件費를 除外하고 人件費가 除外됨으로 資料擴充에 어느 程度 寄與한다고 볼 수 있으나 私立大學圖書館의 경우는 人件費까지 包含시켜야할 處地이므로 全體圖書館豫算에서 圖書購入費의 比率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私立大學 圖書館의 豫算은 國庫補助없이 自治費로서 運營해야 하는데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⑩ 圖書館專擔部署와 委員會問題

우리나라는 館種別로 圖書館을 專擔하는 部署가 相異하여 指揮, 統制, 企劃이 不調和를 이루고 있다함은 이미 言及한 바 있지만. 大學圖書館을 包含하여 모든 圖書館을 一括統制하는 專擔部署가 없는 實情이다. 美國은 保健教育福祉省에 圖書館局이 있고 圖書館局의 下部組織으로서 大學圖書館課, 公共圖書館課, 專門圖書館課, 學校圖書館課, 圖書館教育課를 두어 館種別로 圖書館育成을 위해 支援하고 있다. 또한 美國은 美國圖書館諮問委員會가 大統領直屬으로 設置되어<sup>78)</sup> 圖書館의 役割, 奉仕方向등을 建議하는 業務를 遂行하며, 委員會의 建議로서 「國家圖書館 및 情報科學委員會 (nationa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mmittee) 를 發足하여 國家圖書館政策의 樹立과 監督을 하는 權限을 委任받고 있다.

圖書館 專擔部署의 設定은 全國의 館種別圖書館에 대한 行政體制의 一元化를 期함으로서 圖書館政策樹立

에 寄與할 것이며, 委員會의 設置는 圖書館의 育성과 發展對策의 建議機能 遂行하여 圖書館政策의 立案에 寄與하게 될 것이다.

六. 館種別圖書館 組織運營의 發展對策

1. 公共圖書館

① 閱覽座席의 大幅增加

在學生들의 複習이나 學習의 場이 必要하다면 學生 閱覽室의 座席을 大幅增加시키거나 學生閱覽室을 別途로 設置하여 利用者別 組織機能을 強化시켜야 한다.

② 移動圖書館의 大幅擴大

市立, 道立, 郡立圖書館은 積極 讀書體制를 推進하기 위하여 自動車文庫의 設置를 強化해야하고, 大都市의 경우 出退勤時間帶에 中心街의 要素에 移動文庫車輛을 配置하여 住民登錄證確認만으로 손쉽게 圖書를 貸出し켜 國民讀書運動을 繼續 展開할 必要가 있다.

③ 兒童 및 靑少年圖書館의 設置

奉仕組織機構의 多樣化는 地域住民을 위한 公共圖書館의 目的과 一致함으로 利用者別 組織 基準에 依據하여 兒童係, 靑少年係의 設置強化가 要請됨으로 公共圖書館으로서 未開拓分野인 兒童圖書館을 地域別로 設置하거나 兒童을 위한 閱覽係를 두어 特殊指導를 擴大해야 한다.

④ 公共圖書館 專擔機構의 設置

公共圖書館 業務의 莫重한 奉仕使命을 效率的이고 體系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現在와 같은 指揮體系의 多元化를 止揚하고 文教部內에 獨立된 公共圖書館課를 設置해야 한다. 機構組織의 一元化는 組織의 原理와도 一致되기 때문이다.

⑤ 司書의 再教育實施

利用者 要求의 多樣性和 高度性を 勘案하고 이에 對處하기 위해 現職司書의 再教育計劃을 세워 自體教育의 實施와 海外研修를 위한 派遣을 積極 實現해야 한다. 奉仕의 極大化를 위해선 最新의 奉仕技術을 習得하는 것이 優先해야 하기 때문이다.

⑥ 廣域組織網의 設定

公共圖書館의 相互協同을 通한 情報資料의 相互貸與와 情報의 提供을 通해 利用者의 便益極大化를 成就토록 國立中央圖書館을 頂點으로 하는 公共圖書館組織網을 設定하여 相互 緊密한 連繫性을 가져야 하며, 地域組織網의 構成을 위해 最少限 人口 5萬내지 10萬名을 基準으로 公共圖書館의 分館을 設置해야 한다.

⑦ 公共圖書館 設置의 擴大

公共圖書館이 없는 多數의 地域과 貧弱한 圖書館을

78) 張一世, "國家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 道報, 1975. 11) p.12.

新設 또는 增築할 必要性이 時急하다. 最少限 郡單位  
를 基準으로 1個館의 圖書館을 設置하거나 人口 5萬名  
을 基準으로 1個館의 圖書館을 設置하도록 圖書館法을  
改正하여야 한다. 그것은 地域住民 全體를 對象으로  
하는 公共圖書館 本來의 目的이나 機能과 一致하기 때  
문이다.

⑧ 主題別 資料室의 設置強化

圖書館의 社會奉仕라는 役割機能을 제대로 遂行토록  
하고 우리나라의 工業國家指向의 目標과 步調를 맞춘  
機械, 纖維, 重化學, 電子工業 등에 대한 最新의 產業  
情報를 提供하기 위하여 既存 公共圖書館의 地域의 人  
特性에 알맞는 機械工業資料室, 纖維工業資料室, 重化  
學工業資料室 등과 같은 特定主題別 圖書館 機構組織의  
新設이 바람직하다.

⑨ 直接教育計劃의 實現

直接教育奉仕를 통한 住民들의 意識開發을 위하여  
時事講座, 文化講座, 講演會, 主婦大學, 市民大學, 季  
節講座를 不斷히 推進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公共圖  
書館內에 教育奉仕課 또는 係의 設置運營이 바람직하  
며 機構增設에 無理가 간다면 有關教育機關과의 協助  
로서 共同推進에 一役을 擔當하는것도 有益할 것이다.

⑩ 圖書館稅의 徵收

現在와 같은 地方稅 收入중 極히 微弱한 圖書館 豫  
算의 配定으로서의 公共圖書館의 役割을 目的대로 期  
待하기는 어렵다. 文化政策의 一環이 되는 圖書館業務  
가 存在價値의 危機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이를 打開하  
기 위하여 이미 論議된 바와 같이 地方稅중에서 圖書館  
稅를 新設하여 財源을 確保하거나<sup>79)</sup> 公共圖書館基金委  
員會와 같은 後援團體를 組織하여 社會各階層의 參與  
로서 大的인 支援對策을 마련해야 한다. 現在와 같  
은 豫算體系下에서 公共圖書館은 自己機能을 제대로  
遂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 學校圖書館

① 施設基準의 上向調整

初·中·高等學校의 學校圖書館에서 閱覽座席의 不  
足은 이미 言及한 바와같이 公共圖書館으로 學生이 集  
中되는 傾向을 빚고 있어 公共圖書館自體의 對住民奉  
仕機能에 까지 影響을 주고 있으므로 現行의 施設基準  
令을 改正하여 最少限在學生數의 10~20%까지 閱覽座  
席을 確保하여 圖書館의 利用效率을 높여야 한다.

② 基本藏書의 大幅擴大

學校圖書館을 통하여 教師中心의 知識傳達教育을 止  
揚하고 自律學習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現在와 같은 藏  
書基準으로서의 資料構成이 貧弱해 질수 밖에 없으며  
로 藏書基準을 先進國과 같이 學生 1人當 10卷以上씩  
上向調整할 必要가 있다. 거기에는 參考圖書, 定期刊

行物 視聽覺資料등 資料別로 基本圖書館을 備置할 것을  
規定하여 利用效果의 內實을 期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專任司書教師의 採用

現在와 같은 司書教師 한사람이 모든 圖書館業務를  
管掌하여 運營한다는 것은 圖書館業務와 奉仕의 內容  
이 貧弱한 狀態이거나 職務遂行을 放置하게 되는 結果  
를 招來하게 될것이므로 司書教師의 增員을 期하거나  
外國과 같이 專任司書教師를 採用하여 業務의 現實化  
實際化를 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後述하는 바  
와 같은 讀書指導 專門教師制度의 採擇으로 學校圖書  
館의 機能을 確保하는 것이 時急한 課題이다.

④ 正規司書의 採用

圖書館法 施行令을 改正하여 司書教師以外에 正規司  
書를 學校圖書館에 配置하도록 義務規定化 시켜야 한  
다. 大部分의 圖書館은 正規司書의 未備로 말미암아  
圖書의 分類나 目錄같은 가장 基本的인 要素조차 갖추  
지 못하고 無秩序하게 書架에 圖書만 羅列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이러한 圖書館業務의 不在狀態를 是正시키  
고 業務의 合理化 내지 最低限의 基本軌道에 올리  
기 위해서라도 正規司書를 配置하도록 法令을 改正하여야  
한다. 司書가 없는 圖書館이란 冊의 倉庫나 保管場所의  
구실 밖에 못하기 때문에 司書의 採用으로서 基本的인  
業務以外에 奉仕分野의 機能을 強化시키도록 政策的인  
改善이 따라야 한다.

⑤ 讀書指導時間의 配定

初等學校를 除外한 中·高等學校에서는 現在와 같은  
教科課程으로는 圖書館利用指導와 讀書指導는 放課後  
의 特活時間이 아니면 不可能하게 編成되어 있으므로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 定規教科課程에 讀書教育時間을  
國語時間과 같이 編成해야 한다. 司書教師로 하여금  
讀書教育時間을 擔當토록 하면 效率的인 讀書力向上의  
效果를 거둘수 있는 것이다.

⑥ 讀書專門教師制度의 採擇

現在와 같이 司書教師와 補助員으로 거의 一元化되  
어있는 學校圖書館 運營組織體制를 變更하여 圖書館運  
營, 奉仕를 擔當하는 正規司書와 讀書指導만을 專擔하  
는 讀書專門教師로 二元化시켜 圖書館機能의 合理化를  
期하여야 한다. 讀書專門教師의 需給은 現在의 司書教  
師로 하여금 一定한 研修를 거친다음 讀書專門教師로  
任用하면 좋을 것이다.

⑦ 圖書費의 設定

現在까지 學校圖書館이 育成되지 못한 것은 豫算의  
貧困에 의한 資料具備의 不實에도 原因이 있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 主務官廳에 의한 學校圖書館育成計劃을

79) 圖書館稅의 新設案은 第13回 全國圖書館大會(1975年 11  
月3日)의 建議事項이기도 하다.

立案, 實踐하거나 登錄金중에서 圖書費를 獨立項目으로 新設하여 一定한 豫算을 確保함으로써 漸進的인 發展策을 講究해 나가는 方法중에서 擇一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 3. 大學圖書館

#### ① 圖書館學의 教養科目化

在學生들로 하여금 圖書館資料의 活用度를 높여 그들의 專攻學問을 合理的으로 研究하여 學位를 取得케 하기 위하여 教養課程部에 圖書館學概論을 必須科目化할 必要가 있다. 圖書館의 司書가 利用案內를 隨時로 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利用의 圓滑性을 期할 수 없을 뿐 아니라 研究主題와 關聯된 資料를 自力으로 檢索하기는 어렵다. 在學生들에게 圖書館學의 基本原理와 內容을 理解시키는 것이 優先的으로 實行되어야 한다.

#### ② 指定圖書館室의 擴大

現在 우리나라 大學圖書館같이 主題別圖書館이 一般化되어 있지 못한 狀況에서 過渡期的인 方法으로 單科大學別 指定圖書館室의 擴大는 必要하다. 이것은 中央圖書館의 混雜度를 줄이고 學習效果를 높일 수 있는 長點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規模가 작은 單科大學의 圖書館에서는 學科別 指定圖書書架를 開架式으로 運營하던 效果의 일 것이다.

#### ③ 積極奉仕體制의 具備

對利用者 奉仕의 積極化를 위해 教育的인 面에서 技術能力의 向上을 圖謀하기 위한 自體教育和 研修教育의 實施, 實務面에서 參考室의 參考圖書索引集 備置, 定期刊行物室의 內容目次奉仕(Contents Sheet Service)의 實施, 總藏書目錄의 刊行, 新着圖書 案內書의 配付, 制度的인 面에서 夜間大學, 大學院이 設置된 大學의 경우 夜間貸出制度的 實施, 有能한 高級司書의 確保 등에 重點的인 施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 ④ 相互貸借制度的 強化

相互貸借制度는 비단 大學圖書館間의 貸借制度를 超越해서 公共圖書館이나 特殊圖書館등을 包含한 廣域相互貸借制度를 發展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一次的으로 隣近地域 相互間의 相互貸借協定을 맺어 資料源의 利用率을 増大시키고 二次的으로는 大學圖書館과 他館種圖書館間으로 擴大시키며, 마지막으로 全國範圍의 相互貸借制度로 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隣近地域間에는 教授와 學生이라면 누구나 쉽게 必要한 資料를 利用할 수 있게 되어야 하며, 遠距離인 경우에는 郵便을 活用하는 등의 具體的인 研究가 隨伴되어야 할 것이다.

#### ⑤ 主題司書의 育成

傳統的인 業務를 擔當하는 司書로 하여금 1~2分野의 主題에 關해 依託教育을 圖書館自體의 豫算으로 받게 하는 方法과 新規의 專攻分野를 가진 司書를 採用하

는 方法이 있다. 그러나 後者의 方法은 人力需給上 現在와 같은 一般司書의 量產體制下에서는 期待하기 어렵다. 따라서 大學圖書館은 既存司書로 하여금 該當大學의 主題別 學科에서 講義를 受講토록 하는 方法등으로 主題司書를 育成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같은 方法은 制度的 改善이나 法規的인 補完의 先行이 없어도 圖書館 自體에서 能히 實現시킬 수 있는 것이다.

#### ⑥ 司書의 處遇改善

國公立大學 司書의 경우 司書書記補(5級乙)부터 司書官(3級甲)까지 5等級되어 있는 것을 最少限 司書補(4級乙)부터 理事官(2級甲)까지 6等級으로 調整하여 司書職의 昇進制限을 撤廢시키며 初任이라도 4級乙에서부터 出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러차례 論議되어 온 것으로서 圖書館長은 當然히 司書職의 昇進者로 補하도록 해야 하고, 課長級은 大學教員과 같은 待遇를 하여 期成會補助金은 물론 一般研究費, 課題研究費등을 大幅 支給하여 高級司書의 誘因策으로 活用해야 한다. 이와 併行하여 業務의 難易度에 따라 勤務時間을 短縮하는 것도 研究되어야 한다.

#### ⑦ 司書의 海外派遣

司書의 高級化와 技術習得을 위해 國公立大學은 教員派遣과 같이 司書의 海外研修計劃을 세워 強力히 推進해야 한다. 私立大學 司書에게도 國庫補助金과 各種의 外國財團基金의 活用을 可能케 하는 對策을 아울러 樹立하여야 한다. 또한 大學自體도 優秀한 大學圖書館에 司書를 派遣勤務케 하여 새로운 奉仕方法과 技術을 體득케 하여야 한다.

#### ⑧ 組織構造의 擴大強化

大學圖書館의 非能率的인 機構組織을 改革하기 위해 收書課, 閱覽課에서 司書課, 調查研究課를 追加하여 4課以上으로 改編하도록 法令의 改正이 要請되며, 綜合大學校의 경우 單科大學과 附設研究所에는 모두 主題別圖書館을 設置하고 主題司書를 配置하여 名實共히 大學의 研究機能을 積極的으로 補助하는 役割을 擔當케 해야 한다. 具體的으로 國立大學校設置令을 改正하여 私立大學에 準用토록해야 한다.

#### ⑨ 國費支援의 強化

國公立大學 圖書館에 支給하는 國費의 補助金을 大幅 增額하고 私立大學圖書館에도 支援토록 文教部豫算編成에 圖書費項目을 設定해야 한다. 아니면 모든 大學圖書館에 財政支援策을 講究하기 위해 大學補助金委員會의 設置案<sup>80)</sup>도 研究할 必要가 있다.

#### ⑩ 圖書館局, 圖書館諮問委員會의 設置

圖書館發展을 위해 政府組織法을 改正하여 文教部內

80) 韓相完, "大學圖書館發展政策의 基底", 道魂월보, 16권 9호 (1975. 11) p. 25.



에 圖書館局과 率下에 館種別 圖書館課를 設置하여야 한다. 또한 圖書館政策樹立을 위한 諮問機構로서 圖書館開發政策委員會,<sup>81)</sup> 圖書館開發委員會,<sup>82)</sup> 圖書館 및 情報學에 關한 諮問委員會<sup>83)</sup> 등의 名稱들이 提案되고 있음을 參酌하여 圖書館諮問委員會를 大統領直屬機構로 設置할 必要가 있다.

### 七. 結 論

以上에서 圖書館의 組織概念과 役割, 圖書館組織의 原理와 基準, 館種別圖書館의 組織構造, 機能上的 問題點을 考察한 後 圖書館組織運營의 發展對策을 改善案으로 提示하였다.

組織運營의 發展對策중에서 全館種의 圖書館에 共通되는 戰略으로서는 ①司書의 處遇改善 ②組織構造의 擴大強化 ③施設基準의 大幅強化 ④國費支援의 擴大 ⑤司書의 再教育 ⑥圖書館稅制度의 設定 ⑦圖書館專擔機構의 設置로 볼 수 있다.

館種別로서 公共圖書館은 ①自動車文庫의 擴大 ②兒童圖書館 設置 ③廣域組織網設定 ④公共圖書館數의 增

加 ⑤主題別資料室의 設置 ⑥教育業務의 分擔이며, 學校圖書館은 ①基本藏書의 擴大 ②專任司書教師制度의 採擇 ③正規司書採用의 制度化 ④設書指導時間의 配定 ⑤設書專門教師制度의 導入 ⑥圖書費의 設定이 戰略要素가 된다. 大學圖書館의 發展戰略은 ①圖書館學의 教養科目化 ②指定圖書室의 擴大 ③積極奉仕體制의 確立 ④相互貸借制度의 擴大強化 ⑤主題別司書의 育成 ⑥司書의 海外研修를 들 수 있다.

이와같은 當面課題에 대한 改善方案이나 是正對策은 間歇的으로 또는 部分的으로 學界나 實務界에서 主張되어 왔으나 戰略的인 側面에서 發展對策에 關한 論議나 研究는 눈에 띄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文化指向의 인 福祉國家의 實現을 위한 時代的 要請에 副應한 圖書館組織運營의 發展戰略은 時期에 拘縛될지는 모르나 實現시키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까지 이르렀다. 本稿에서 다룬 것도 이미 先進諸國에서 實行중이거나 效果가 證明된 것도 많으며 現實的인 妥當性뿐만 아니라 即刻 實行이 容易한 것도 있을 것으로 確信한다. 이러한 戰略의 實現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學界와 實務界 그리고 中央의 企劃 및 政策擔當者들과 協同的인 連繫아래 積極的인 推進活動이 꾸준하게 展開되고 實現될때 總體的인 文化暢達과 國民教育의 成果를 極大化하는데 寄與하게 될 것이다.

81) 張一世, 前揭論文, p.14.

82) 姜俊浩, "特殊圖書館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 도림월보, 16년9호 (1975. 11.) p.29.

83) 韓相完, 前揭論文 p.25.

## 「韓國國境領土關係文獻集」 出刊

梁泰鎮 編著

國內初有의 國境領土文獻集인 本書는 우리 國民의 領土意識을 鼓吹시킴과 아울러 우리나라 邊境 領土關係研究에 寄與하고자, 오랫동안 韓國領土關係研究에 이바지하여온 編著가 其間에 發表한 韓國疆域考라는 論文을 비롯하여, 大韓民國國境關係文獻目錄 獨島關係目錄集 등 多數의 論著를 夙年 實績을 總括하는 意味에서 本書 第1編에 韓日間에 爭點이 되고있는 獨島問題를 有關條約, 聲明書, 兩國政府間의 見解, 그리고 韓日兩國에서 發表한 數多한 論文과 關聯地圖, 獨島關聯年代表등을 收錄하여 이 分野에 關心있는 分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끔 編輯하였으며 第2編에는 韓末高宗年間에 淸國과의 紛爭을 일으켜 非常한 關心을 일으켜 왔던 間島問題에 關한 韓·中·日 三國에서 發表한 論著 4百餘件 關聯外交文書 5百餘件과 間島協約文등을 실었는가 하면 最近 北傀·中共間에 領土紛爭을 若起시켰던 바 있는 白頭山과 水豐峯 등에 關한 關係論著目錄, 그리고 鴨綠江 및 個門江發電事業에 關한 日淸間의 覓書, 水力發電事業 共同經營에 關한 約定等重要文獻을 수록하였다. 第3編에는 韓·中 兩國間의 國境線이 韓·中·蘇 三角關係로 變遷된 우리나라 最北韓의 豆滿江沿岸에 놓여 있던 鹿屯島가 蘇聯의 領土로 併合된 경위를 살피는데 貴重한 研究資料가 될 日本陸軍省의 外交文書와 歷史的으로 照明할 典據가 되는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鹿屯島關聯記事들을 收錄하였다.

以上과 같은 內容을 실은 本書는 現實的으로 當面하고 있는 獨島問題라든가 앞으로 統一以後에 必然的으로 提起될 北方間問題研究에 至大한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4·6倍版 / 315面 / 100部 限定 / 定價 7,000원

發行: 甲子文化社 配布: 박에서림 (265-3673)